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7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서영교

이학영 · 송옥주 · 민병덕

문진석 • 이수진 • 민형배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게 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였으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사무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고 있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의 인사 관련 절차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제4항 신설 등).
-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명은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과 그 외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위촉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등).
-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국가경찰위 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 항,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 경찰위 원회의에 부친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제8호의4 신설 등).
- 마.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와 경찰청장 에 의한 재의 요구 및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의2 신설).

-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 (안 제11조).
- 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 2 신설).
- 아. 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 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도경찰청장 임용 대상 자의 추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6호).
- 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재의 요구하게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 카.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하고, 1명의 위원은"을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위원 중 상임위원은"을 "위원장과 제3항에 따른위원 중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의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을 "(국

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5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3명은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를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로, "사항"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

전부장관은"을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 8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 8의3.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의4.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 경찰위원 회의 회의에 부친사항
- 10. 그 밖에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재의에 관한 사항) ① 국 가경찰위원회는 제10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⑤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사무처)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를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경찰청장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의 추천"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경찰위원회의 사무처의 설치를 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국가경찰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국가

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종 전의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경찰 위원회와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종전의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 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수행하기-----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 ③ -----위원장(이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 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 다)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위원 하다. 장과 1명의 위원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신 설>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 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른 위 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원 중 상임위원은----.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 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명・위촉 및 결격사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 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다.

② 행정안전<u>부장관은 위원 임</u> 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 ⑥ (생 략) <신 설>

5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 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 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3명 은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다.

<삭_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 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 의 ·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의결 사항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1. ~ 8. (생 략)<신 설>

<신 설>

<u><신 설></u>

9. <u>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u> <u>경찰청장이</u> 중요하다고 인정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에 부친 사항

<신 설>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u>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

<u>의결 사항 등)</u> ① <u>다음 각 호</u> <u>사무)</u> ① <u>국가경찰위원회의 소</u> <u>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u> <u>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u>

- 1. ~ 8. (현행과 같음)
- 8의2.제11조의2제3항에 따른국가경찰위원회의사무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 8의3.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

 무총리에 대한 경찰청장 임

 명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

 항
- 8의4. 「경찰공무원법」 제6조

 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

 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사

 항
- 9. <u>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u> <u>또는 경찰청장이</u>-----
 - -----<u>사항에 대한 심의</u> ·의결
 - 10. 그 밖에 국가경찰 및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있다.

<신 설>

제10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재의에 관한 사항)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0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 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⑤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운영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행정안 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 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1조의2(사무처) ① 국가경찰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제10조제1항제8 호의2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임명한다.

제14조(경찰청장) ① (생 략)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 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다.
- ③ ~ ⑩ (생 략)
-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 5. (생 략)
 -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 ④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 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정 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 음)
- ② -----국가경찰위원회 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 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 ③ ~ ⑩ (현행과 같음)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 6. -----경찰청 장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 임용 대상자의 추천-----

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 보

7. ~ 17. (생략)

② (생략)

-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저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생 략)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아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아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생략)
-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생략)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 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7.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경찰청장은 국</u>
가경찰위원회를
⑤ (현행과 같음)
에28조(시·도경찰청장) ① (현
행과 같음)
2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
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의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용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